

국외출장 보고서

I. 출장개요

	내용
출장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대체복무 전문가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용하였던 경험이 있는 대만에서 제도 도입 및 시행 초기 관련 공론화 과정 추적하여 공론화의 쟁점을 알아보고 각 쟁점별 사회적 합의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을 파악하여 우리 사회에서 예상되는 공론화의 방향 제시 ○ 대만 대체복무 경험자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복무경험자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서 대체복무제도의 실제적인 운영에 따른 장단점을 알아보고 시사점 도출
출장기간	2019.06.05.~06.08.(3박 4일)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대만 타이베이 국립 타이완 사범대학(國立臺灣師範大學) 국립 타이완 정치대학(國立臺灣政治大學)
출장자	강태경 (법무사법개혁연구실, 부연구위원)

II. 출장 내용

○ 면담 개요

6월6일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복무 경험자(국립 타이완 사범대학 재학생 沈克諭, 尹振光) ○ 국립 타이완 사범대학 汪俊彦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관련 인터뷰 - 대체복무경험자(2인, 사범대학 재학생) 심층면담 ※ 통역: 한국외국어대학교 임대근 교수
6월7일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 타이완 정치대학 朱立熙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복무제도 현황 및 사회적 인식 관련 인터뷰 ※ 통역: 한국외국어대학교 임대근 교수

○ 대체복무제 경험자 면담

○ 대체복무제 신청

-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자 모두가 원하는 경우 대체복무를 이행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음
- 입영 연령이 되면 병무청에 대체복무 신청을 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체역에 편입됨
- 대만은 최근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는 기초군사훈련과 단기(4개월)의 복무를 내용으로 하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음(단, 1994년 1월 1일 이전 출생 남성은 1년의 병역 혹은 대체복무를 함)

○ 대체복무

- 대체복무 경험자 沈克諭(이하, 면담자 A)는 시청의 사회복지 부서에서 사무 보조 업무를 하면서 대체복무 마침
- 대체복무 경험자 尹振光(이하, 면담자 B)는 군인공제회에서 사무 보조 업무를 하면서 대체복무 마침
- 면담자 A와 B는 모두 대체복무 기간 중 출퇴근 형태로 복무하였고, 근무처의 다른 구성원들과 동일한 근무 조건에서 복무하였음
- 면담자 A와 B의 대체복무의 급여는 현역병 급여와 동일하게 받음
- 면담자 A와 B는 대체복무 기간 중 근무처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차별을 받은 경험이 없음
- 면담자 A와 B는 대체복무 기간 중 병무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고, 대신 근무처로부터 복무 관리·감독을 받았음
- 면담자 A와 B는 대체복무 완료 후 복학하여 대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다른 현역 복무자와 차이를 느끼지 못함

○ 대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 면담자 A와 B는 대체복무자로서 복무 중이나 복무 후 사회적인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음
- 면담자 A와 B는 대만에서 대체복무는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병역의무 이행의 여러 방법 중 하나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으로 생각함
- 면담자 A와 B는, 지인 중 취업을 한 대체복무자들도 취업 시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함
- 면담자 A와 B는, 국방력 강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대체복무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징병제 하에서 지나치게 짧은 복무기간이 국방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한다고 이야기함

○ 전문가 면담 내용

○ 대만의 대체복무제 연혁

- 2000년 대체역(代替役) 제도를 도입하면서, 병역의무자는 현역 복무를 대신하여 사회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됨(대체역실시조례 제5조)
- 대만은 대체역 제도 도입 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제도를 설계한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자 모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설계하였음
- 이 과정에서 대만의 정치권과 사회적 여론이 대체역 제도 도입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기에 제도 시행을 서두를 수 있었음
- 대체역 제도는 대체복무자들이 현역복무자의 권리와 의무를 유사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복무의 정의’라는 이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

○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대체역 제도

- 2000년 대체역(代替役) 제도를 도입하면서,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군사 훈련이 포함된 병역을 대신하여 사회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됨(대체

역실시조례 제5조)

- 대만에서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는 ‘희망의 복무’라고 평가됨
- 대체역 제도는 국민의 종교와 양심이라는 기본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대체역 제도는 복무자의 재능과 지식과 전문 능력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대체 복무를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임

o 병역 제도 현황

- (완전 모병제 유예) 2014년 말 완전 모병제로 전환하기로 예정됐으나 아직까지 모병 인원수가 부족하여,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 남성이 일률적으로 4개월의 대체복무를 실시하고 그 이전 출생 남성은 1년의 병역 혹은 대체복무를 실시하도록 함
- (병역 복무 기간의 변화) 1990년 7월 1일부터 2년이었던 복무기간이 점차 단축되어 1년 8개월(2004년), 1년 6개월(2005년), 1년 4개월(2006년), 1년 2개월(2007년 7월), 1년(2008년)으로 변화했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모병제 전환 이후 1993년 이후 출생 남성은 4개월의 군사훈련을 받은 뒤 기본 소질을 향상하여 전시 방위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됨

o 일반대체복무 현황

- (2017년 기준 일반대체복무자 통계) 최근 1년(2017년) 간 일반대체복무를 수행한 복무자의 총 인원은 16종별에 걸쳐 23,900명임(체육 복무 5,871명, 사회 복무 4,402명, 경찰 복무 3,893명, 소방 복무 3,843명,, 경제안전 복무 48명, 정보 복무 23명 등)
- ① 복무 종별 증가(당초 6종에서 16종까지 늘어남), ② 교육 및 사회 복무 인원 증가(시행 첫해인 2000년 전체 인원 5천 명 가운데 경찰 복무자가 3천명에 육박했지만, 2017년에는 경찰 복무가 16%로 감소했고 교육 복무와 사회 복무가 전체 인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

○ 종교적인 이유에 의한 대체복무 현황

- 종교적인 이유에 의한 대체복무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대만에서 종교적인 이유에 의한 대체복무자는 한해 평균 60명 안팎(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

<대만 역대 종교 요인에 의한 대체복무 인원수(연도별)>

2000 / 31	2009 / 48
2001 / 20	2010 / 48
2002 / 19	2011 / 57
2003 / 10	2012 / 59
2004 / 33	2013 / 70
2005 / 32	2014 / 75
2006 / 46	2015 / 69
2007 / 40	2016 / 87
2008 / 42	2017 / 66

- 내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복무자의 종교와 신앙, 인권을 존중하여 가족 및 종교 요인에 따라 경찰 복무와 소방 복무 신청을 보장하고 있고, 대체복무의 기간도 점차 단축하였음

○ 대체역 제도의 의의

- 유럽 지역의 사회복무제도의 이념은 기독교와 인도주의 정신에 근거하여 병역 연령 남성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을” 종교와 양심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에 따라 사회복무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불리기도 함. 대체복무는 현재 30여개 국가에서 사회복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국가의 건설에 도움을 주는 우수한 점이 많다고 판단
- 대만 사회복무 정책의 형성은 원래 병역 자원 과다가 우선이며, 종교 요인은 차순위 고려 대상이었으므로 유럽 국가와는 상황이 다름
- 대만의 사회분야 대체복무는 사회 복지 분야의 인력을 충원하는 제도로 작동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생활에 관한 새로운 이념을 제

시

○ 대체역 제도 운영상 문제점

- 사회복지 실시 이후 장단점이 모두 드러나면서 근래에는 근무 기관이 대체복무자의 복무 수준과 태도를 문제 삼아 대체복무자 수용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함
- 대체복무 남성의 복무 만족도도 높지 않아 정부의 장기 사회복지 정책에 어려움 발생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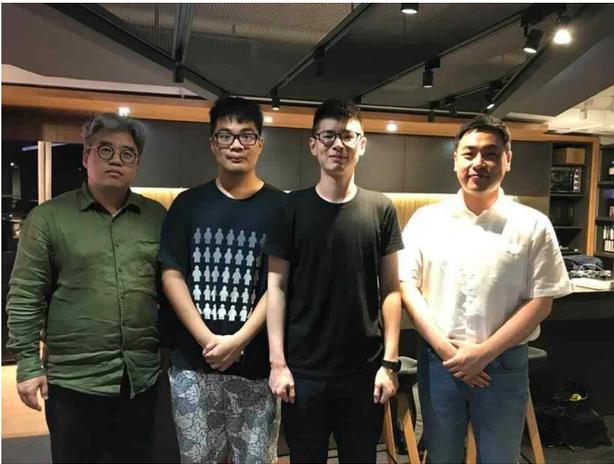
- 인권 규범적 요청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에 대한 시사점
 - 대만의 경우, 출퇴근형 근무 방식을 전제로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의 1.5배로 설정하고 대체역 제도 실시 후 단계적으로 그 기간을 줄여 현역복무기간과 동일하게 함(현역복무기간도 단계적으로 단축시켰음)
 - 한국의 경우, 병역법 제5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11헌바379 등) 및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판결(2016도10912)에 따라, 국방부는 ①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②복무 장소는 교정시설로 단일화 하며, ③복무 형태는 합숙근무로 통일된 단일 모델 제시
 - 현재 시민인권단체는 국방부가 제시한 모델은 현역병의 1.5배가 넘는 복무기간을 설정하고 있기에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징벌적 대체복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의 대체역 제도 운영 성과는 큰 시사점을 줌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넘어 일반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시사점
 - 대만이 2000년에 대체역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용하였던 데에는 해당 제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뿐만 아니라 일

반 병역의무자 모두를 위한 제도였다는 점과 사회복지 및 안전과 같은 공공 분야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제도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음

- 한국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병역의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 제도를 구상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대체복무 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긍정적 효과가 크다면 복무 분야와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대만의 사례는 큰 시사점을 줌

□ 기타 증빙 자료

○ 면담자



대체복무 경험자(좌: 尹振光, 우: 沈克諭)



국립 타이완 사범대학 汪俊彦 교수



국립 타이완 정치대학 朱立熙 교수

o 수집자료 목록

- 賴兩陽, 「台灣社會役制度的政策發展與運作困境」, 『東吳社會工作學報』第12卷, 2005.
- 李昱勸·吳承瑩, 「從“人力資源規劃”分析我國體育替代役未來人力規劃可行性策略」, 『中華體育季刊』第18卷 第2期, 2004.
- 李昱勸·吳承瑩·洪立, 「我國體育替代役實施現況分析」, 『大專體育學術專刊』上半年, 2003.
- 吳政龍, 「醫療外交替代役在聖多美與普林西比民主共和國」, 『臺灣醫界』第55卷 第4期, 2012.
- 王傳照, 「論全民國防的兵役制度」, 『國防雜誌』第21卷 第1期, 2006.
- 周明輝, 「實施募兵制對軍民關係之影響」, 『國防雜誌』第25卷 第6期, 2010.
- 陳新民, 「臺灣兵役替代役的制度簡介」, 『軍法專刊』第64卷 第3期, 2018.
- 彭正中, 「我國「兵役政策」發展之研究－以決策理論觀點檢視」, 『國防雜誌』第21卷 第6期, 2006.